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시즌 5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다움을 담은 로컬브랜드 대표 상품과 사회적가치 특화 브랜드 개발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시즌 5」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4. 30.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I 사업 개요

- 사업명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시즌 5
- 목 적
  -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 및 기존 상품(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지역의 전통과 환경, 문화 등 지역다움을 담은 로컬브랜드 대표 상품 및 사회적가치 특화 브랜드 개발
- 사업기간 : 2024. 04. ~ 2024. 12.
- 신청기간 : 2024. 04. 30.(화) ~ 2024. 05. 14.(화). 자정까지 접수에 한함
- 지원규모 : 4개 기업 이내
  - 수요맞춤 컨설팅 기업 별 최대 2회
  - 사업개발비 기업당 15,000천원
  - 기획 홍보 온라인 판로지원

## II 사업 세부내용

### □ 모집분야 및 선정규모

주요 분야	특성	규모
①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일자리 중심 기업	4개 기업 이내
② 친환경	자원의 재활용,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 친환경 포장디자인 개선 등 환경적 가치 추구 기업	
③ 지역공동체	지역과 마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 공동체 형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생산·판매 기업	
④ 로컬푸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포장, 제조하여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상품(서비스) 생산·판매 기업	

※ 분야별 1개 기업 선정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분야별 중복 선정 가능

### □ 지원자격 필수 요건 (모두 해당)

-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 및 기존 상품(서비스) 고도화 과정을 통해 지역다움을 담은 사회적가치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제주도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업력 2년 이상,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상
- 제품 서비스 개발 인력 3명 이상 보유(대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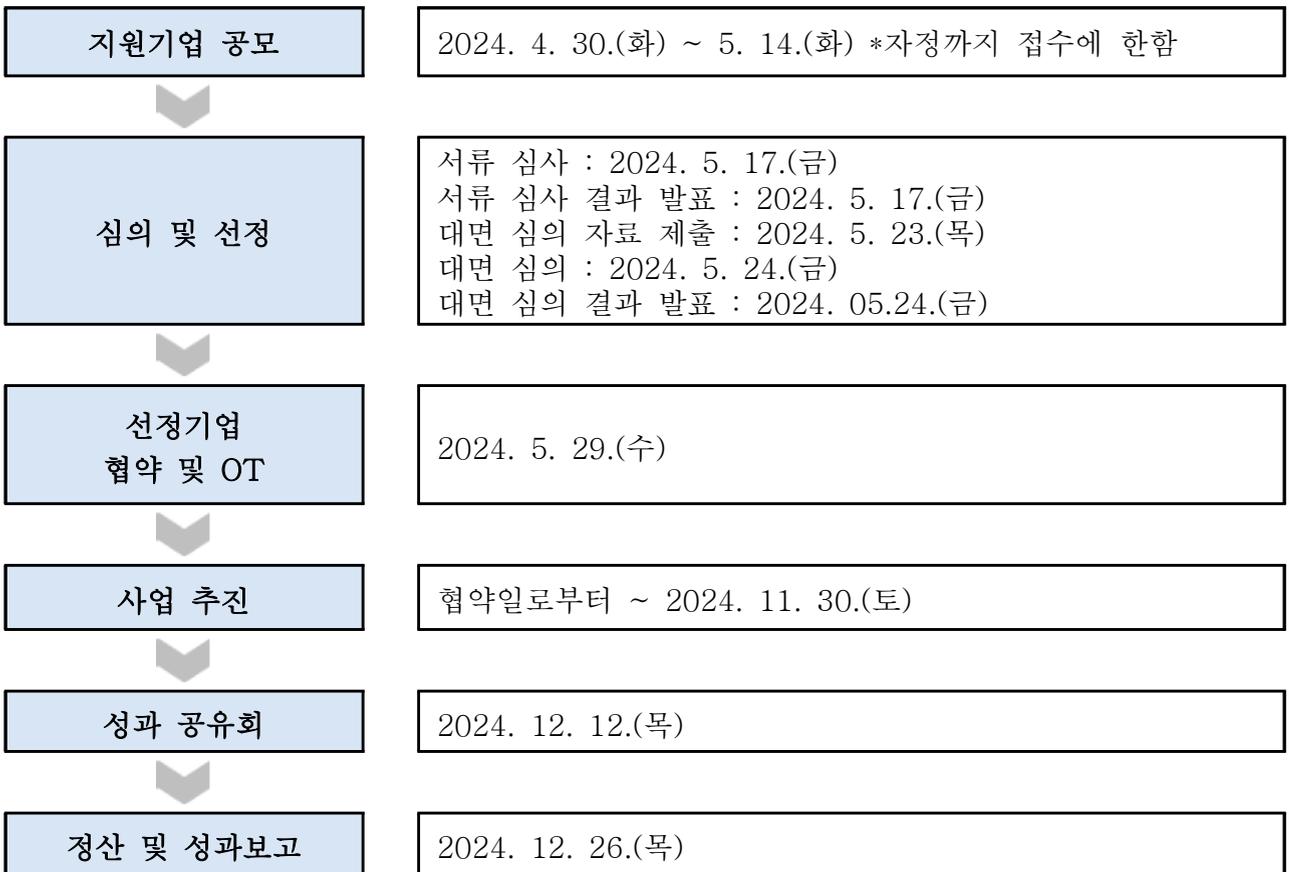
#### 신청제한

- 주사무소 소재지가 제주도가 아닌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약정 해지된 기업
- 「2019-2023년도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은 기업
- 2024년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타 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아래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은 법인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법인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신청서류

연번	서류명
①	[서식1] 사업신청서
②	[서식2] 사업계획서(사업비 사용계획 포함)
③	[서식3]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증빙1]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 재무제표
⑤	[증빙2]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등)
⑥	[증빙3] 사업자등록증
⑦	[증빙4] 법인등기부등본
⑧	[증빙5]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시점 기준)
⑨	[자유양식] 대면심의 발표용 사업계획 PPT 자료

□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II 심사 및 선정

□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 서류 일체 심사
  - 서류심사 선정규모 : 2배수 이내
  - 서류심사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사업계획(60)	• 지원사업 취지 적합성	10
	• 사업 추진 전략 및 실현가능성	25
	• 사업운영 및 예산배분의 적정성	25
사업파급효과(40)	• 사업 지원 효과(사회적가치 및 고용 창출)	20
	• 성과의 활용방안 및 지속가능성	20

- 2차 대면심의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 대면심의 선정규모 : 4개소 이내
  - 대면심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서류심사(40)	• 서류심사 평가결과 반영	40
사업수행 혁신성(30)	• 사회적가치 명확성 및 목표 부합성	15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목표의 구체화 정도	15
사업수행 지속성(20)	• 시장전망 및 매출 향상 전략	10
	• 사업의 성장가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0
사업수행 능력(10)	• 발표자의 준비성 및 태도 등	5
	• 대표자의 사업 의지 및 기업 역량	5

\* 최종 선정은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IV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비는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로만 작성하며 부가세 포함
- 사업화에 필요한 간접비용(회의비, 사업관리비 등)은 자부담 편성

## □ 사업비 사용 제한

- 선정 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회계감사, 소송대리 비용
- 관리비, 공공요금(우편, 전화 등),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정보사용료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 기타 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심사 및 컨설팅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 신청 및 심사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 선정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선정기업 협조사항

- 교부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여 집행하고, 최종 정산해야 함
- 선정기업 대표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이 반드시 전체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진행에 있어 센터 담당자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정된 사업 및 사업비 집행 계획은 협약 사항에 반영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 사업 종료 후 2년간 기업현황 파악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한 : 공고일~ 2024.05.14.(화) 자정까지 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jejuhub.org](http://www.jejuhub.org))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 소식공유 → 지원센터 소식 → 해당사업 공고 내 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서류 [사업명\_기업명]으로 압축(.zip)하여 파일 첨부
- 문의처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유성장지원팀 김명석 주임  
☎ 070-4236-3385

## V 붙임

---

- 사업참여 신청서
- 사업실행 계획서
-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비 사용 기준